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I. 제안이유

현행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시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등 감면규정 삭제(조례 제3조).
-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규정 삭제(조례 제14조의 1).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안 제24조의 2).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규정 신설(안 제24조의 3).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을 신설(안 제24조의 4)

Ⅲ. 관련 법적근거

○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15일부 개정에 따른 것임

Ⅳ.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부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명시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서 승용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차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임대주택에 대하여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게 반영함.
-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규정 신설함.
-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등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